

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인턴 채용 재재공고

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-211호

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24일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1. 선발예정인원 (총1명)

지원 코드*	채용 분야	담당업무	선발 인원 (명)	근무예정기관 (근무지)	담당 연락처 및 지원서접수(이메일)
인턴 1-5	일반행정	○보조금운영관리 업무지원	1	본부 혁신행정담당관실 (세종)	차재율 044-201-1267 (jaeyul1010@korea.kr)

* 근무예정기관(근무지)으로 접수기간 내 지원서 이메일 접수(타 기관 중복 지원불가)

가. 근무조건

- (신 분) 청년인턴(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
- (계약기간) '23. 7 ~ 12월(채용일로부터 6개월)
 - ※ 채용 일정에 따라 채용일은 달라질 수 있음
- (보 수) 월 2,010,580원 지급(세금공제전)
- (근무시간) 주 40시간(주5일, 일별 09:00 ~ 18:00, 휴게시간 12:00~13:00)
- (후생복지)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* 출퇴근 지원 및 숙소지원 없음

- 그 밖의 근로(복무)조건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직근로자 등 운영 규정」 과 각 소속기관별 공무원직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※ 겸직은 금지

나. 주요 업무 내용

○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시 세부조정 될 수 있음

지원코드	채용 분야	주요 업무
인턴 1-5	일반행정	○ 농식품 보조금 관리 지원 - 보조금 점검 결과정리, e나라도움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개선 의견수렴 회의, 자료 작성 지원

2.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등

가. 응시자격요건 :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① (연령) 최종시험(면접)예정일('23.6.12) 현재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만19세~만34세)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

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「병역법」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

▶ 군복무기간 1년미만 : 1세 / 1년이상 ~ 2년 미만 : 2세 / 2년이상 : 3세 연장

② (결격사유)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결격사유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우대요건 : 서류전형에서만 적용(원서접수 마감일('23.6.2)기준 유효해야 인정)

○ 취업지원 대상자

평정요소	배점	평가기준
취업지원대상자	관련 법률 참조	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름
<p>《 취업지원 대상자(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)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		

-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

○ 자격증 및 전공 등

지원코드	채용 분야	우대 요건
인턴 1-5	일반행정	○ [자격]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워드프로세서(종전 1·2·3급 인정), 컴퓨터활용능력(1급·2급), 정보처리기사(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) 또는 GTQ(포토샵, 프리미어)

3. 시험 방법

가. 서류전형

-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*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(단,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)

* 서류전형 기준 : 1. 자기소개서, 2. 우대요건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3. 6. 8.(목) 17:00 예정
 -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, 나라일터에 면접일정 등 게재

기관명	홈페이지 주소
농림축산식품부 본부	www.mafra.go.kr

나.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,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(평가요소) ①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 - (평가방식) 개별면접 / 자기소개서, 응시원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·응답

4. 시험 일정

구 분	일 정	내 용
채용공고 (재재공고)	'23.5.24.(수) ~ '23.6.2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나라일터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시
응시원서 접수	'23.5.29.(월) ~ '23.6.2.(금) 18:00 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응시원서 등 '응시자 제출서류'를 작성 후(자필서명) 스캔 (PDF)파일을 채용담당자 이메일(jaeyul1010@korea.kr)로 접수 접수마감일 16 시까지 수신된 메일까지만 유효 ★ 응시기관에 반드시 이메일 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3.6.8(목) 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, 나라일터 게시 합격자 개별 통보(문자)
면접전형	'23.6.12(월) 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☞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불참하여 미응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
최종 합격자 발표	'23.6.16(금) 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개별 통보(문자)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

※ 근로계약 체결 전 합격취소, 결격사유 해당,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,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5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

가. 접수일시 및 방법

-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담당자 이메일(jaeyul1010@korea.kr)로만 접수(**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**)
- 접수기간 : 2023. 5.29(월) ~ 6.2(금) 18:00시까지 이메일 접수분
 - ※ 접수 확인 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
- 응시서류는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, **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(PDF)**로 제출(파일제목은 응시자 이름), **e-mail 제목은 “성명(지원코드)”**
 [예 : 홍길동(인턴1-5)]로 기재

나. 제출 서류

- 붙임 서식1호 ‘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’ 체크 제출

연번	구분	내용	비고
1	응시원서 1부	•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	필수
2	자기소개서 1부	•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	필수
3	동의서 1부	•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(서명필수)	필수
4	확인서 각 1부	• 공정채용 확인서(서명필수) •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(서명필수)	필수
5	증명서 각 1부	• 주민등록초본 1부(남성의 경우,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) 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(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되도록 발급)	필수
6	결격사유 검증자료 1부	•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	필수
7	우대 요건에 해당되는증명서	• 관련 자격증 증빙서류 • 어학능력 증빙서류 • 대학교 이상 학위증명서(학위증) •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(국가보훈처 발행)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	해당자
8	반환청구서 1부	•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서명필수)	해당자

※ 반드시 근무예정기관(지역)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(타 기관 접수시 불합격 처리)

6. 기타 유의 사항

-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은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(공고문 1. 담당자 연락처, 044-201-126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서식 제1호>

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

응시번호	지원코드	채용분야	성명	연락처
* 담당자 기재	1-5	일반행정		* 핸드폰 번호

제출 서류에 ✓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(PDF)

연번	서류명	비고	제출
1	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	서식 1	
2	응시원서 1부	서식 2	
3	자기소개서 1부	서식 3	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	서식 4	
5	공정채용 확인서 1부	서식 5	
6	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1부	서식 6	
7	주민등록 초본 1부	병역사항 포함	
8	가족관계증명서 1부		
9	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	서식7	
이하부터는 해당자에 한함			
10	'우대요건'에 해당하는 증명서	해당되는 증명서 기재 및 제출	
11	채용서류반환청구서	서식 8	

※ 필수서류(1~7번 항목)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

※ 우대가점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

불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작성자(응시자) :

(인/서명)

<서식 제2호>

응시원서

1. 인적사항				
응시번호		성명	(한글) 홍길동	(지원코드) 인턴 01-2 (채용분야) 홍보
생년월일	1900년 01월 01일			
현주소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			
연락처	(본인휴대폰) 010-0000-0000	전자우편	0000@korea.kr	
우대요건				
※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기 하십시오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지원대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 해당자				
2. 교육사항				
*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.				
교육구분	학과명 및 교육과정		교육기간(시간)	
○○대학교	○○○○○ 학과		2~4년	
○○대학원				
3. 자격사항 등				
*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/전문자격, 국가공인민간자격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.				
자격증	자격증명	발급기관	취득일자	
정보화 자격증	점수	발급기관	취득일자	
어학	종류	점수(등급)	발급기관	취득일자

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3 년 월 일

지 원 자 : 홍길동 (서명)

※. 「응시번호」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.

※. 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,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

응시원서 작성요령

1.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2. 『응시원서』는 아래의《작성요령》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《 작 성 요 령 》

- ① 응시번호 :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.
-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: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의 응시원서를 선택하여 작성
- ③ 성명, 생년월일 :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
(예) 생년월일 : 2001.10.15.
- ④ 주소 : 현재 거주하는 곳(우편물 수령 등)을 정확히 기재함
- ⑤ 전자우편·(휴대)전화 :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
- ⑥ 우대요건 : 우대요건은 표에 내용 작성

※ 우대요건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

※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,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 또는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
<서식 제3호>

자기소개서

응시번호		지원코드		채용분야	
성명			생년월일		

◎ 자기소개서
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

※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,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

◎ 자기소개서

2023년 월 일

작 성 자

(서명)

공정채용 확인서

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인턴 지원(채용)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인턴 지원(채용)에 있어, 지원(채용)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친·인척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입수하거나 입수를 위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.
2. 본인은 청년인턴 지원(채용)에 있어, 향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·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서약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서약자 : (서명)

농림축산식품부 ○○장 귀하

<서식 제6호>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(직급)
	채용사유		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에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에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에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-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-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⑫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
용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3. . .

성명 : (서명)

농림축산식품부 ○○장 귀하

<서식 제8호>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23 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 ○○○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 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